

간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인문학연구원운영규정”의 제9장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인문과학』의 투고와 심사 및 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투고에 관한 사항

제2조(투고자의 자격) 국내·외 연구자로서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3조(논문의 제한) 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단, 통상적인 연구발표장에서 배포된 발표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은 투고할 수 있다. 투고 논문은 인문학의 제반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을 주요 연구 범위로 해야 한다. 인문학 이외의 전공 영역이나 신생 분야를 다루더라도 인문학적 문제 의식을 내포한 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다.

제4조(투고 기한) 논문은 수시로 투고가 가능하나, 해당 호에 게재하려면 해당 호 발행일 2달 전까지 투고하여야 하며,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문 형식) 논문 본문의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괄호 안에 외국문을 병기할 수도 있다. 논문의 체제와 형식은 “논문투고 지침”의 규정을 받는다.

제6조(논문 분량) 게재 논문 전체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분량을 초과할 경우 소정의 분량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각 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제8조(심사결과 수합)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게재 등급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게재 등급을 판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심사 결과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	A	A	당호 게재
A	A	B	당호 게재
A	A	C	수정 후 당호 게재
A	A	D	수정 후 당호 게재
A	B	B	수정 후 당호 게재
A	B	C	수정 후 당호 게재
B	B	B	수정 후 당호 게재
A	B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A	C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A	C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A	D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B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B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C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C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C	C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D	D	게재 불가
C	C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제10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등급 판정 완료 후 심사평가 게재등급 판정 결과를 포함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1조(반론권)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반론이 제기되면 접수하여 재심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심사이후의 조치)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에 붙이되, 투고자는 “심사결과통보서”의 “수용 의견 및 반론”란을 통해 심사의견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해태하거나 원고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 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13조(특집 논문) 기획에 의해 제출된 논문도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한다.

제14조(조정)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당초 계획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성적순으로 게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게재 판정을 받더라도 제2장 각조의 투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발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제15조(간기) 연 4회,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온라인으로 정기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상위 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것은 “인문학연구원운영규정”의 규정을 받는다.

제17조(연구윤리 규정) 별도의 세칙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두어 연구윤리 확립과 부정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8조(편집실무 규정) 별도의 세칙으로 “논문투고 지침”을 두어 편집실무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제19조(편집실무 운용) 편집의 실무를 담당할 편집주간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연구원장이 위촉하여 운용한다.

제20조(게재료) 일반 논문의 경우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하여 게재료를 청구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의 경우 책정된 게재료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증정) 발행의 실무가 완료되면 논문 게재자에게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제5장 (부칙)

이 개정안은 제34집(2004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39집(2007.2.28.)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42집(2008.8.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논문투고·심사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제53집(2014.2.28.)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54집(2014.8.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59집(2015.11.30.)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62집(2016.8.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64집(2017.2.28.)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69집(2018.5.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제84집(2022.2.28.)부터 적용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인문과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부정행위 교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

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정행위 교사”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한다.
-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원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원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문과대학장, 연구원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철저하게 신원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보자는 피조사자의 이름 또는 논문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적시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원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 접수 경위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완료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본 학술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아래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이 포함된 논문 투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본인은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이하 규정)”을 숙지하였고, 추후 규정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되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 규정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투고자 : (본 건을 인문학연구원에 전송하는 것으로 서명을 갈음합니다. 단 직접 제출하는 경우 투고자 성명란 오른쪽에 친필 서명을 요합니다.)
----------------------------	--

제19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논문투고 지침

(2021년 11월 30일 개정 / 제84집부터 적용)

I. 기본 사항

1. 투고 자격 및 논문의 제한

- 국내외 연구자로서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 투고 논문은 인문학의 제반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을 주요 연구 범위로 해야 한다. 인문학 이외의 전공 영역이나 신생 분야를 다루더라도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내포한 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다.
- 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단, 통상적인 연구발표장에서 배포된 발표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은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 방법

- 논문은 인문학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은 한글 파일(HWP)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본문의 언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타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투고여부와 투고양식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문 논문의 경우 괄호 안에 외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3. 심사비 · 분량초과게재료 · 연구비지원논문게재료

-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심사자 1인당 2만원이므로 모든 투고자는 3인의 심사자에 대한 심사료 6만원을 부담한다.

- 게재가 확정될 경우에 전임의 경우 20만원, 비전임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부담한다. 단, 사사표기를 명기한 모든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35만원을 납부한다.
- 초록 등을 포함하여 게재 논문 전체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분량을 초과할 경우 200자 원고지 1매당 2,000원의 분량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논문의 저작권

-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인문학연구원이 소유한다.
- 투고자는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저작권 이양동의’에 따라 저작권 양도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인문학연구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II. 원고의 형식

1. 구성

- ① 투고논문은 제목·필자·목차·국문초록·논문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의 순서로 정리하여 투고한다.
- ② 논문본문은 장·절·항을 적절하게 나누고 각각 적당한 제목을 붙여 구성한다. 머리말·맺음말도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장은 I. II. III. 으로,
절은 1. 2. 3.으로,
항은 1) 2) 3)으로 표시한다.

2. 제목·필자·목차·국문초록

- 투고논문 제1면에 제목·필자·목차·국문초록의 순서로 제시한다.
이 내용이 모두 1면에 들어가도록 분량을 제한한다.

① 제목

- 제목 이하 모든 내용은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어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한다.
- 사사표기가 필요한 경우 제목에서 각주를 열어 표기한다.

② 필자

- 필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괄호 안에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명기한다.
외국인일 경우 국문으로 발음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으며, 소속이 외국일 경우 그 국가명을 표기한다. (편집과정에서 각주로 처리함).
-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한다.

(예) 김진균(성균관대 연구교수)

(예) 진관타오(金觀濤,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강좌교수)

(예) 테리 이클턴(Terry Eagleton, 영국 랭카스터대학 교수)

(예) 나혜심(성균관대 연구교수, 제1저자)·이찬규(성균관대 연구교수, 공동저자)

- 필자의 이름을 열거할 때 중간점은 반드시 전각기호의 중간점을 사용한다. (hwp의 경우 유니코드 2024)

③ 목차

- 목차를 제시한다. 장만 제시하고 절·항 이하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문초록(국문주제어 포함)

- 논문 초두에 200자 원고지 1~2매 분량의 국문초록과 5~6개 가량의 주제어를 첨부한다.

3. 투고논문의 본문

① 기본원칙

- 본문은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맞춤법과 문장부호 외국어표기 등은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에서 제시하는 어문규정에 따른다.
- 원어가 노출된 논문은 반드시 필자가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어의 병기는 고유명사, 전문용어 및 서술 의도를 분명히 하는 용어에 한한다.

② 문장부호 사용의 예시

- 따옴표 : 인용 및 강조
(예) 그는 “인생이 고해다.”라고 말했다. (※ 인용문이 문장임).
(예) 그가 말한 “고해의 인생”이란 이런 것이었다. (※ 인용문이 구절임).
(예)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 용어의 강조)
- 괄호 : 원어 제시 및 구절 이하의 간단한 주석적 설명.
(예) 동유(東儒)의 논설 / 우리나라 선비(東儒) / 소설(Novel) / 병자호란(1636) / 다산(茶山, 정약용의 호)
(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베르그송(Bergson, Henri) / 원시예(文學) / 분가쿠(文學)
- 말줄임표 : 생략을 표시하는 말줄임표는 앞뒤로 반각(한 칸) 띄운다 :
.....
(예) 국학은 근대에 출현한 것이다. 그것은 근대 민족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 줄표 : 생몰년 및 어디에서 어디까지 : ~ (‘-’표시는 不可)
(예) 정약용(丁若鏞, 1762~1836)
- 중간점 : 본문에서 나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간점은 반드시 전각기호의 중간점을 사용한다. (hwp의 경우 유니코드 2024)
(예) 서울·대전·대구·부산
- 낫표(「 」) : 국문 논문의 표시. (반각기호)
- 겹낫표(『 』) : 국문 저서의 표시. (반각기호)
- 꺾음괄호(< >) : 일간지, 주간지, 그 이외 방송매체의 표시. (반각기호, hwp의 경우 자판에서 직접 입력)

③ 인용문

-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문을 제시해야 할 경우, 인용문의 문단은 위아래로 1행을 띄고 왼쪽에 여백을 설정하여 서술본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한다.
- 매 인용문에 각주를 열어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주에서 제시하는 원문이 한문인 경우 반드시 구두점을 표시한다.

④ 표·그림

- 표와 그림의 하단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필요할 경우 각주를 통해 설명한다.

<표 1> 정약용의 ‘천(天)’과 『천주실의』의 ‘천(天)’ 비교

4. 각주

- 모든 주석은 본문 하단의 외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하버드 방식의 내각주 혹은 미주는 허용하지 않고, 완전인용의 원칙으로 표기한다.
- 인용하는 책의 서지를 공중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확하게 밝힌다. 한적(漢籍)의 경우, 영인본 여부, 소장처 및 영인 여부를 밝힌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널리 알려진 기본 자료라 할지라도 필자 자신이 참고한 판본(또는 영인본)의 서지를 정확하게 밝혀준다.
- 국문 문헌의 경우 저자, 「편명」, 『서명』, 출판사, 간행년도, 쪽의 차례로 제시한다.
- 정기간행물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발행단체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학술지의 제목이 고유하지 않아 명기할 필요가 있는 대학연구소 발간물의 경우.
- 인용하는 글의 쪽수 표시는 한국어의 경우 ‘쪽’으로, 그 이외 외국어인 경우에는 ‘p.’ 로 한다.
- 쪽수가 여러 장인 경우에 “ ~ ” 로 연결한다. (예) 1~8쪽
쪽수의 번호는 생략하지 않는다 (예) 176~9쪽 (X) 176~179쪽 (O)
- 필자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필자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 ‘줄고’ 등의 표현 금지.
- 원문을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먼저 “ ”안에 제시하고 심표를 찍은 후 인용처를 밝힌다.
- 국내 인용서의 경우는 발행지를 표시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 중 필요한 것에 한한다.
(예)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145쪽.
(예) 이병근, 「음장의 사전적 기술」, 『진단학보』 70집, 1990, 45쪽.
(예) 월터 옹 저,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18쪽.

(예) 김준석, 「조선후기 기호사림의 주자인식」, 『백제연구』 18,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1987, 1~10쪽.

(예) Benedict Anderson, *Die Erfindung der Nation*, Frankfurt/M., Campus-Verlag, 1988.

· 학위논문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예) 류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재’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6.

· 편저의 경우 각 언어의 표기방식에 따라서 편저 표기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편, 영어는 ed., 독일어는 hrsg. 등.

· 단행본에 실린 동양서 논문의 경우는 필자, 논문제목, 편자, 단행본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서양서 논문의 경우는 필자, 논문제목, 편자, 단행본 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조선시대」, 홍경래 편, 『한국사』, 지식산업사, 1998, 56쪽.

(예) T. John, “Oriental History”, C. Brown, ed., *World History*, London: Longman, 1996, p. 89.

·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는 “저”, 번역자는 “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마샬 맥루언 저,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58쪽,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은 언제나 이것들에 의해 변하고, 또한 반대로 기술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발견해 간다.”

· 신문의 인용 : 일간지는 < >으로 표기하고, 기사는 “ ”으로 표기한다.

(예) “20세기 최고 지성 러셀 사상의 결정판”, <중앙일보>, 2011년 3월

16일, 15쪽.

- 인터넷 글의 인용 : 인터넷 주소와 최종접속일을 괄호 안에 명기한다.
(예) 이승우, “한글공정 때문에 휴대폰 한글자판 표준화 서두른다,”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1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 2011.6.3.).
- 국문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제목」, 『정기간행물 제목』 권수 호수,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외국어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의 경우, 저자(이름 성 순서), “논문제목”, 정기간행물제목(이탤릭체), 권수, 호수,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 재인용
바로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 ‘앞의 논문(책)’으로 표기한다.
바로 뒤는 아니지만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편명을 제시한다.
(예)
 - 1)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145쪽.
 - 2) 앞의 책, 155쪽.
 - 43)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34쪽.
 - 3) 강용순, 「한국어 어휘부 구조」,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4집, 1998, 62쪽.
 - 4) 앞의 논문, 63쪽
 - 50) 강용순, 「한국어 어휘부 구조」, 62쪽.
- 외국어 문헌의 재인용 : 바로 앞의 책은 Ibid., 한참 앞의 책은 op. cit.로 표기한다.
(예)

- 1) Terry Eagleton, *Walter Benjamin or Toward a Revolutionary Criticism*, London: Verso, 1981, p. 99.
- 2) Ibid., pp. 102~105.
- 34) Terry Eagleton, op. cit., p. 96.

-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이 재인용될 경우, 제목을 약술하고 년도를 병기하여 구분한다.

(예)

Sean Homer, *Jacques Lacan*. Oxon: Routledge, 2005.

Sean Homer, *Jacques Derrida*. Oxon: Routledge, 2005.

이를 재인용할 시

Sean Homer, *JL*, 2005.

Sean Homer, *JD*, 2005.

- 다중인용 : 논문 여러 편을 한번에 참조한 주석을 달아줄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楊國榮 저, 김형찬 역, 『양명학』, 예문서관, 1994; 勞思光 저,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古代篇』, 探究堂, 1986 참조.

5. 참고문헌 · 영문초록 · 키워드

①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크게 <자료> // <연구논저>로 분류한다.
- 하위범주에서 세분화의 필요가 있을 경우, 1, 2, 3의 순서로 구분한다.

(예)

<자료>

1. 원자료

2. 간행된 자료

<연구논저>

- 연구논저의 하위범주는 국문문헌//동양서//서양서의 순서로 하되, 국문문헌은 가나다, 서양서의 경우 ABC의 순서로 제시하며, 기타 외국문의 경우 해당 언어의 관례에 의한 순서로 제시한다.
- 서양서의 경우 참고문헌에서는 각주와 달리 필자는 “名 姓”이 아니라 “성, 명”의 순서로 적는다.

(예) Eagleton, Terry, *Walter Benjamin or Toward a Revolutionary Criticism*, London: Verso, 1981, pp. 99~102.

- 논문본문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의 목록을 완전인용의 원칙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 논문의 경우에 학술지 내 해당 논문이 실린 페이지를 표시한다.
- 논문본문에서 제시한 문헌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제시하지 않은 문헌이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
- 외국인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1저자만 성, 이름 순, 제2저자부터는 이름 성 순서대로 표기한다.

② 영문초록(영문필자명, 영문키워드 포함)

- A4 1장 이내의 영문초록(Abstract)과 5~6개 정도의 키워드(Key Words)를 첨부한다.
- 영문초록은 제목 아래에 반드시 필자의 이름과 소속 및 이메일 주소를 제시한다.

(예) Kim, Jin-Kyun(Research Fellow, SKKU / bujiwibuji@skku.edu)

※ 이상에서 제시한 원칙 중 특수한 분야의 문헌표기 방식은, 나름의 일관성과 공중 확인의 원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여타의 형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편집위원회의 직권으로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반려할 수 있다.

Ⅲ. 논문작성의 예

제 목*

-부 제-

홍 길 동**

- I. 문제의 제기
- II. ‘정치지리학’에서 ‘지정학’으로
- III. 동아시아적 계기들
- IV. 광역체제의 구상과 동아시아
- V. 맺음말: 공간을 역사 서술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 국문초록

일반적 선입견과는 달리 지정학은 나치 독일이나 일본 군국주의가 만든 것도 그들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지정학은 그 이념에서 랏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출발한다. 그는 지구를 대륙과 해양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이 갖는 지리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주제어

지정학, 맥킨더, 랏젤, 마한, 하우스호퍼, 슈미트, 대공간, 동아시아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0000).

** 한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1. 맥킨더와 마한

1)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

21 세기가 시작되는 벽두,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마이어 (Charles S. Maier)¹⁾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시대구분을 통해 20세기의 특징을 추출해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토성 원칙’ (Principle of Territoriality)이라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²⁾ 그에 따르면 187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100년간의 세계는 문화, 경제, 정치, 기술 등 모든 면에서 ‘공간’ (Raum/space)에 대한 국가의 컨트롤을 사 고나 행위의 중심점에 두고 진행된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근거로 19세기 말경부터 시작된 지정학적 모델과 이론들의 발전, 그리고 전지구적 공간을 구체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들을 언급한다.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는 심장국가를 지휘하고
심장국가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섬(World-Island)을 지휘하며,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휘한다³⁾

1) Charles S. Maier, “Consigning the 20th Century to History: Alternate Narratives for the Modern Er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5, No. 3, 2000, pp.807~831.

2) 이진일, 「주권-영토-경계: 역사의 공간적 차원」, 『사림』 35, 2010, 400-422쪽.

3) Halford Mackinder,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London: Constable Publishers, 1919, p. 106.

• 참고문헌

『뉴레프트 리뷰』, 2013 No. 4, 길, 2013.

데이비드 딜레니, 『영역』, 시그마프레스, 2013.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1985).

Diekmann, Irene, u.a. ed., Geopolitik: *Grenzgänge im Zeitgeist*, Potsdam:
Verlag für Berlin-Brandenburg, 2000.

Dulfer, Jost, Martin, Bemd, Wollstein, Gunter, hrsg., *Deutschland in Europa*,
Frankfurt/M./Berlin: Propyläen, 1990.

European Geopolitical Perceptions for East Asia between Two World Wars

Hong, Gil Dong*

Unlike the general prejudice, geopolitics is a phenomenon confined neither to Nazi Germany nor to Japanese militarism. In its beginning geopolitics was closely related with Friedrich Ratzel, a German geographer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Eastasia, Geopolitik, Mackinder, Ratzel, Mahan,
Haushofer, Schmitt, Grossraum, Kontinentalblock,
Space

필자 E-Mail: 필자 이메일

투고일: 2018년 4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4일 /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4일

* Center for East Asian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